

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
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

서 문

대한민국(이하 “대한민국”이라 한다)과 인도공화국(이하 “인도”라 한다)은, 이하 공동으로는 “당사국들”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“당사국”이라 하고,

양 당사국의 오랜 우호관계, 확고한 경제적 연계 및 긴밀한 문화적 유대를 인정하고,

2005년 1월 대한민국과 인도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이하, “협정”이라 한다)의 혜택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연구단의 발족과 이 협정에 대한 협상의 기본 골격으로 가능한 공동연구단의 권고 및 통합된 일괄 합의로서의 이 협정의 구조를 상기하고,

경제통합을 통한 양 당사국의 국내시장 확장이 양 당사국의 경제발전 가속화에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,

상호 호혜적인 경제관계의 증진을 희망하며,

이 협정이 자본 및 인적자원 유인을 향상시키고 당사국간 뿐만 아니라 그 지역 내에서의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는 더 크고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는 신념을 공유하며,

아시아에서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시장경제의 발전을 육성하고 아시아권 국가들의 경제적 통합을 장려하고자 하는 양 당사국의 약속을 확인하고,

이 협정이 세계무역기구협정에서 구현된 다자무역체제 하에서 세계 무역의 확장 및 발전에 기여함을 재확인하며,

세계무역기구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협력에 관한 다자, 지역 및 양자 협정상의 각자의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며,

더 나아가 양 당사국의 개발 목표에 적합한 경제철학을 추구하고 각자의 정책목표를 인식할 권리를 재확인하며,

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에 따라 환경의 보호 및 보존을 추구하면서 경제 및 무역 자유화를 통하여 자연자원의 최적 사용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며, 그리고

명확하고 호혜적인 무역규범과 산업 및 규제 협력의 확립을 통하여, 상호간의 교역 및 투자를 증진하고 지역 무역통합의 혜택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결의하며,

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.